

온천 법령의 이해

2022년

행정안전부

1. 총론
2. 온천의 이용 및 개발
3. 온천의 보전 및 관리
4. 최근 제도개선 사례

해외사례

1.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 온수

2. 인체에 해로운 성분 미포함

[질산성질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]

1. 일본 : 25도 이상 또는 일정성분 포함(17개)

2. 독일 : 20도 이상 + 일정성분 포함(8개)

3. 체코 : 20도 이상 + 일정성분 포함(3개)

4. 헝가리 : 30도 이상 + 일정성분 포함(2개)

* 치료용 : 30도 이상 + 일정성분 포함(6개)

법제처
해석사례

- 1.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 + 온천공 토지소유자
- 2. 온천우선이용권리는 토지소유권자에게 승계 가능

*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불가

- ☞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,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님
- ☞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,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 승계
- ☞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, 현재 온천공 토지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님

보양온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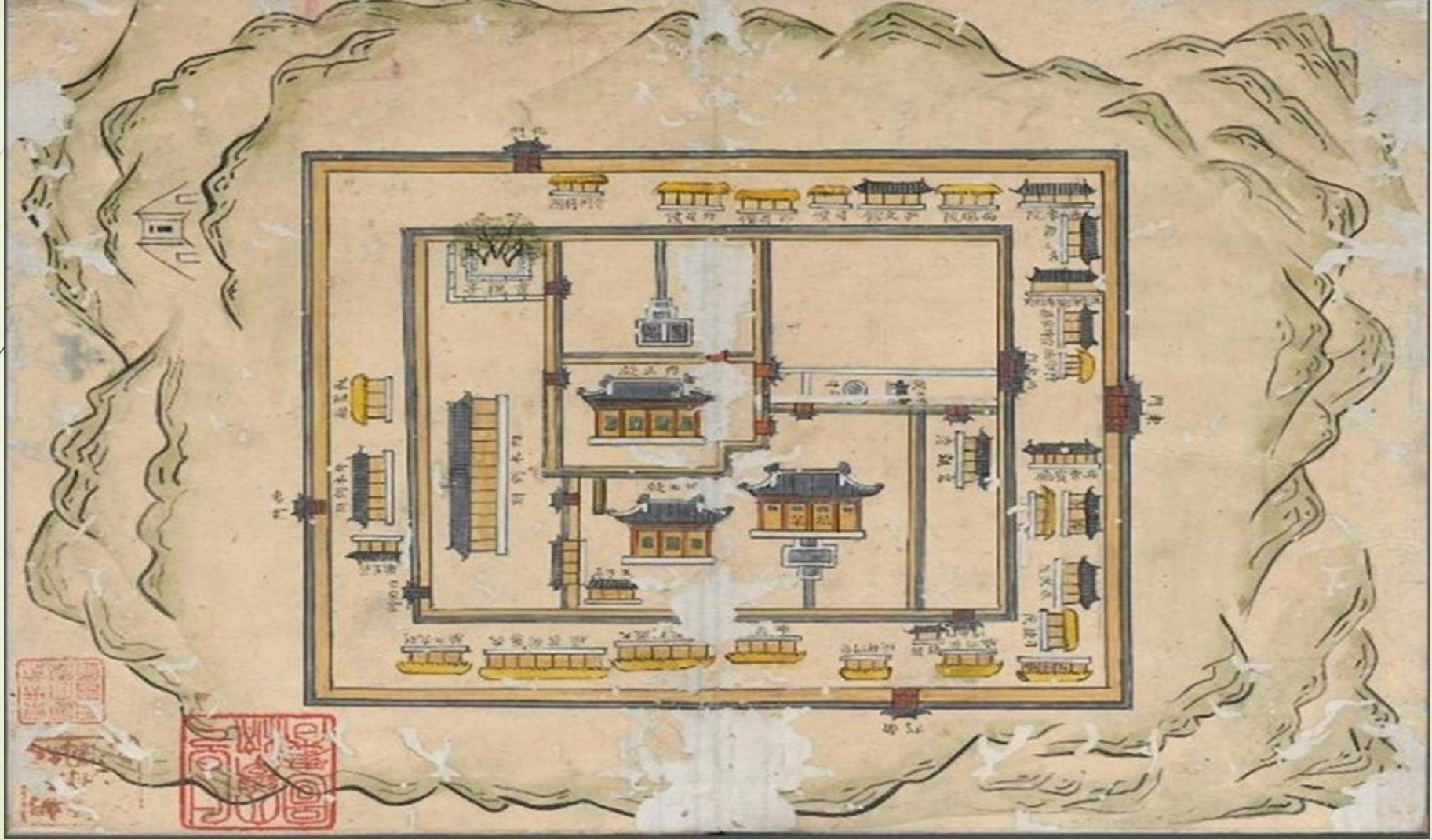
- ◆ **보전관리** : 온천자원관측장비 구축(27개소),
장기미개발온천 개발 관리 강화(71개소)
 - ◆ **온천활성화** : 보양온천 지정(7개소), 온천도시 지정,
온천대축제 개최(매년)
 - ◆ **기반조성** :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방안 연구(1억원)
- ☞ **속초 설악워터피아,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도고**
 - ☞ **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, 동해 그랜드관광호텔**
 - ☞ **창원 마금산원탕, 울진 덕구온천호텔, 거제 거제해수온천**
 - * **개발중** : 화순 도곡비오메드온천, 제주 삼매봉온천

- ◆ 목욕 기원 :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
- ◆ 로마 온천 : 독일 바덴바덴, 영국 바스, 헝가리 세체니 등
- ◆ 삼국사기 : 탕정성, 삼국유사 : 동래온천
- ◆ 온양행궁(온양) : 세종 건립, 현종 · 숙종 · 영조 치료
- ◆ 온정개건비(동래) : 영조 건립, 남녀 별탕(9칸 규모)

온천 효능 연구

- ☞ 온천치료는 자전거 타기, 조깅 효과와 비슷(Conventry 대학)
- ☞ 온천치료은 뇌졸중, 고혈압 37~83% 감소, 치매 60% 감소(Mayo Clinic)
- ☞ 온천을 매주 4회 이상할 경우 고혈압 46% 감소(Eastern Finland 대학)
- ☞ 온천을 매주 4회 이상할 경우 치매 발병률 62% 감소(Bristol 대학)

온양행궁도



카라칼라욕장



굴착허가 서류

- ◆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
- ◆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/임야도
- ◆ 굴착 및 복구계획서
- ◆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

* 온천공 용출구 확대, 심도 증가시에도 굴착허가 필요

굴착불허가 조건

- ☞ 토지소유권 미확보 또는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미동의
- ☞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결과 온천부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
- ☞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
- ☞ 개발제한구역, 농업진흥구역, 보전산지,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위치
- ☞ 도시·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☞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온천가치
판단기준

- ◆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기준에 적합
- ◆ 1일 적정양수량이 300톤 이상
- ◆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
- ◆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
- ◆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
- ◆ 온천발견신고자가 토지 소유 여부

온천발견
신고 취소

- ☞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☞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☞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
- ☞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,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된 경우

지정기준

- ◆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(30,000 m² 미만)
- ◆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
- ◆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 초과

구역 해제 조건

- ☞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(온천전문검사 필요)
- ☞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☞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 오염, 환경/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
- ☞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
온천개발계획
고려사항

- ◆ 온천공 1일 적정양수량
- ◆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
- ◆ 주변환경과의 적합성
- ◆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
- ◆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

온천개발계획
취소

- ☞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(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 필요)
- ☞ 개발 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☞ 개발사업이 중단, 지하수 오염 또는 환경/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
- ☞ 개발계획 수립 2년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
허가 신청 서류

- ◆ 온천이용계획서
- ◆ 수질검사서
- ◆ 온천공 현황[양수시험 결과]
- ◆ 온천 공급계약서[온천공소유자가 아닌 경우]

온천이용허가
범위

- ☞ 음용, 목욕장업, 숙박업에 우선 제공
- ☞ 난방, 에너지시설
- ☞ 양어시설,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- ☞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조시설
- ☞ 의약품, 의약외품,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
- ☞ 관광숙박업의 시설, 유원시설업의 시설
- ☞ 골프장,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
- ☞ 의료기관, 노인의료복지시설, 연구소

허가 취소/제한

- ◆ 보건상 또는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
- ◆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(산업용, 난방용 제외)
- ◆ 보건상, 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

허위광고 예

- ☞ 온천성분 함량을 과다 표기하는 경우(유황, 탄산 등)
- ☞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표시를 사용
[도로명 주소 및 간판 등에 온천표시를 사용]
- ☞ 보양온천으로 승인받지 않고 보양온천표시 사용
- * 일반 목욕장에 대한 스파 명칭 사용 허용

총괄

- ◆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대비 약 34% 감소(연 42백만명)
- ◆ 이용인원은 충남, 경북, 부산이 많음
- ◆ 이용업소는 경북, 충남, 부산이 많음
- ◆ 온천공보호구역은 244개로 8개소 증가
- ◆ 온천원보호지구는 132개로 2개소 감소

세부현황

- ☞ 온천이용인원은 충남 온양, 경남 부곡, 부산 동래, 충남 덕산, 충북 수안보, 대전 유성, 부산 해운대, 경북 보문, 경남 김해, 충남 도고 순으로 많음
- ☞ 온천이용업소는 목욕업 244개, 숙박업 181개, 숙박업 및 목욕업 겸용 138개
- ☞ 온천 일일 평균사용량은 58,806톤
- ☞ 온천온도는 30도 이하가 48% 차지
- ☞ 온천공심도는 700m에서 1,000m 사이가 약 33%로 가장 많음

수질검사

◆ 원 수 : 총대장균군 미검출

◆ 욕조수 : 총대장균군 1개 미초과

* 욕조수 순환 : 레지오넬라균 1,000CFU 미초과

* 염소소독할 경우 : 0.2mg/L ~ 0.4mg/L

* 필요시 질산성질소, 테크라클로로에틸렌 등 포함 가능

◆ 연 1회 실시, 시장·군수 수행(보건환경연구원 위탁)

성분검사

☞ 수소이온농도, 주요 이온성분 등 검사

☞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

☞ 5년마다 1회 원칙(유황, 유리탄산은 연 1회)

온천자원조사

- ◆ 시장·군수는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
- ◆ 적정양수량, 수위변동상황, 수질·성분의 변화 조사
- ◆ 온천자원조사 미 실시할 경우, 발견신고 및 이용허가 불가
- ◆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필요
- ◆ 시장·군수는 온천협회에 위탁 가능

관측장비 구축

- ☞ 행안부장관은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관측시설 설치
- ☞ 온천 지구·구역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 필요
- ☞ 온천의 수위 변동, 온천수 이용량, 온도 등을 상시 관측
- ☞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(예산 : 2억원, 27개소 운영중)

출입검사 대상

- ◆ 온천의 온도,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
- ◆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
- ◆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
- ◆ 온천 거짓 · 과장 광고 여부
- ◆ 온천이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

오염방지명령

- ☞ 주체 : 시장 · 군수
- ☞ 목적 : 온천자원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☞ 대상 :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
- ☞ 내용 : 시설의 개선이나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

보양온천 기준

- ◆ 온도 · 성분 : 35도 이상 또는 광천 · 유황 · 탄산기준 충족
- ◆ 수량 : 최소 210톤 이상
- ◆ 건강시설 : 건강상담실, 운동욕장, 운동실, 수영장 등
- ◆ 기본시설 : 온천욕장, 사우나실, 찜질방, 노천탕, 식당 등
- ◆ 부대시설 : 숙박시설, 의료시설 소유 및 제휴
- ◆ 주변환경 : 공기청정도, 실내소음도, 경관 등

보양온천 절차

- ☞ 시 · 도지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첨부하여 신청
- ☞ 행안부장관은 사업계획 심사,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
- ☞ 시 · 도지사는 보양온천 지정을 관보에 고시

온천도시
기준

- ◆ 온천 온도 · 성분 등이 우수
- ◆ 온천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
- ◆ 온천이용현황 등을 고려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
- ◆ 온천시설현황 등을 고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
- ◆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

온천도시
시범사업

- ☞ 충북 충주시 : 수안보온천 의료체험관광, 수안보온천 홍보 마케팅
- ☞ 충남 아산시 : 온천효과 과학적 검증, 온양행궁 특화, 온천산업박람회 개최

교육 개요

- ◆ 대상 : 온천종사자(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)
- ◆ 주관 : (특)한국온천협회(행안부장관 위탁)
- ◆ 내용 : 온천일반사항, 위생교육, 서비스 향상 등
- ◆ 효과 :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면제
- ◆ 교육시간 : 4시간

불참자 조치

- ☞ 온천협회장은 시장·군수에게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
- ☞ 시장·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
- ☞ 온천종사자 교육 과태료 : 60만원(온천법 시행령 별표2)

온천법 개정

- ◆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: 굴착허가 취소 등
- ◆ 원상회복 과태료 금액 상향 : 500만원
- ◆ 온천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 명시
- ◆ 온천개발계획 실적평가제 도입 : 미개발에 대한 취소

온천법시행령
개정

- ☞ 온천이용시설 범위 확대 : 의료기관, 노인의료복지시설, 연구소
- ☞ 온천도시 지정 및 해제기준 마련
- ☞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: 경력(5년 → 2년), 자격기준 신설
- ☞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: 종사자교육 미수료(60만원)
- ☞ 원상회복 예외 규정 : 관측장비 설치 등
- ☞ 온천공보호구역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·도지사 승인 생략 허용
- ☞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기준 규정

온천법 시행규칙
개정

◆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강화

* 레지오넬라균, 유리잔류염소농도

◆ 온천 지구·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규정

* 일간신문 등 공고, 14일 이상 열람

온천개발 동향

- ☞ 20여년 흥물방치 김제온천 체류형 복합관광지 개발 투자협약(100억원)
- ☞ 충남 아산시, 헬스케어스파산업 지원센터 착공(290억원)
- ☞ 강원 고성,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사업 투자협약(4,100억원)
- ☞ 도고온천,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(103억원)
- ☞ 경남 남해군, 웰니스 온천단지 업무협약 체결(550억원)

일반 동향

- ◆ 코로나 2년, 동네 목욕탕 20% 감소
- ◆ 일본 대학연구팀, 온천욕 병에 걸릴 위험 감소 효과
- ◆ 북한, 마식령스키장 및 양덕온천 관광 준비
- ◆ 대전 온천장 매개 코로나19 확산
- ◆ 경북 상주, 문장대 온천 개발 불가

온천 활성화 동향

- ☞ 마금산원탕보양온천, 온천수 이용한 화장품 개발
- ☞ 경기 부천, 웅진플레이도시 온천스파 오픈
- ☞ 충남 덕산온천, 스플라스 리솜 뚜까따와 손잡고 굿즈 제작
- ☞ 부산 동래구, 산책코스 동래온천길 운영(5.6km)
- ☞ 경남 남해군, 웰니스 온천단지 업무협약 체결(550억원)
- ☞ 유성온천,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핫이슈
- ☞ 충남 아산시, 헬스케어스파산업박람회 개최

석정온천 사례





감사합니다